

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자 명칭을 재정비하고, 효율적인 기금운용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조직개편으로 기금 관리자 명칭변경
 -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
 - 기금분임운용관을 재난관리과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
 - 기금출납원을 재난총괄담당에서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5. 근거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, “재난관리과장”을 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재난총괄담당”을 “안전관리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(생략)	제1조(목적)(현행과 같음)
제2조(기금의 조성)(생략)	제2조(기금의 조성)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(생략)	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용도)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(현행과 같음)
제5조(회계공무원)①(생략) ②기금운용관은 <u>자치행정국장</u> 으로, 기금분임운용관은 <u>재난관리과장</u> 으로, 기금출납원은 <u>재난총괄담당</u> 으로 한다	제5조(회계공무원)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건설교통국장</u> <u>안전관리과장</u> <u>안전관리담당</u>
제6조(기금의 회계관리)(생략)	제6조(기금의 회계관리)(현행과 같음)
제7조(결산 및 보고)(생략)	제7조(결산 및 보고)(현행과 같음)
제8조(시행규칙)(생략)	제8조(시행규칙)(현행과 같음)

關 係 法 令 拔 萃

【재난관리법】

제57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①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,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재난관리법시행령】

제5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)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